이 문서는 보안문서로서 외부 반출을 금합니다.

# 금리 인하 요청서

## 1 인적사항 및 연락처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이름 | | 생년월일 | |
| 주소 | | 연락처 | |

## 2 대출 정보

| | |
|---|---|
| 대출 계좌번호 | |
| 대출 취급일 | |
| 대출 금액 | |

| | |
|---|---|
| 요청 사유 | □직장의 변동 □연소득 증가 □개인신용평점 상향<br>□신용상태 개선 □기타( ) |

■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취업 · 승진 · 재산증가 ·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)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저축은행법 제14조의2)를 말합니다.

■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모바일뱅킹,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가능하며(신청시기 · 횟수제한 없음),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■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■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
**※ 상기와 같이 금리인하를 요청하며,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음을 통지 받았습니다.**

20_____년 _____월 _____일

**성명 :** (서명/인)

HB저축은행

219025/공정희/준법감시실/2022-04-12 13:36